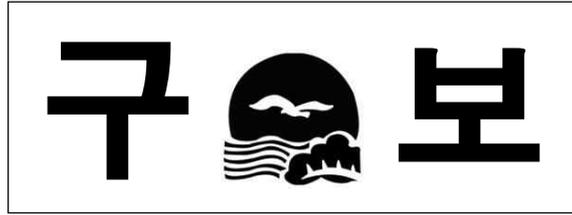


인천광역시 중구

구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.

선 결	기 관 의 장



제 1351 호

2023년 8월 23일 수요일

차 례

공 고

- 인천광역시중구공고 제2023-1332호 (공인 등록 공고) 3
- 인천광역시중구공고 제2023-1333호 (「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방 책임에 관한 조례」) 4
- 인천광역시중구공고 제2023-1335호 (「인천광역시 중구 운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」폐지안
입법예고) 11
- 인천광역시중구공고 제2023-1336호 (「인천광역시 중구 운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시행
규칙」폐지안 입법예고) 15

회 람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 : 인천광역시 중구

편집 : 홍보체육실

공 고

인천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3-1332호

공 인 등 록 공 고

『인천광역시 중구 공인 조례』 제6조 규정에 의거 신조한 공인을 동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. 8. 23.

인 천 광 역 시 중 구 청 장

- 공인 등 록 일 : 2023. 8. 23.(수)
- 공인 등록사유 : 「인천광역시중구고향사랑기금」신설과 관련한 공인 등록
- 등록 공인내역

연번	공 인 명	규격 및 글씨체	인 영	비고
1	인 천 광 역 시 중 구 고 향 사 랑 기 금 출 납 원 인	1.8 * 1.8 (한글전서체)		
2	인 천 광 역 시 중 구 고 향 사 랑 기 금 운 용 관 인	2.0 * 2.0 (한글전서체)		

인천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3-1333호

「인천광역시 중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」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「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23년 8월 23일

인 천 광 역 시 중 구 청 장

인천광역시 중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

□ 개정이유

건축물관리자의 제설·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

□ 주요내용

- 가. 명확한 의미전달을 위한 목적 및 명칭, 용어 정비(안 제1조 ~ 안 제4조, 안 제6조)
- 나. 『자치법규 입안 매뉴얼』의 조·항·호·목의 사용방법에 따라 정비(안 제3조, 안 제4조, 안 제6조)
- 다. 제설·제빙 책임 범위 일부 구체적으로 규정(안 제4조)
- 라. 제설·제빙작업의 시기 내용 수정(안 제5조)
- 마. 제설·제빙 시 안전관리 규정 마련(안 제6조)
- 바. 제설·제빙 시 장비의 구비에 대한 내용 구체적 명시(안 제7조)
- 사. [별표 1] 삭제

□ 의견제출
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나 개인은 **2023년 9월 13일(수)**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수렴서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(참조 : 안전관리과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전관리과(재난관리팀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연락처 등
- 개정안에 대한 찬·반 여부와 그 이유
- 기타 참고사항 등

※ 의견제출 및 문의 전화번호

- ▷ 주 소 : (우22315)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27번길 80 (관동1가)
 인천광역시 중구 안전관리과(재난관리팀)
- ▷ 전 화 : 032)760-7813 [FAX 032)760-7809]

공청회 개최 : 개최계획 없음

인천광역시 중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호	
-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23. 8.

제 출 자 : 안전관리과장

1. 제안이유

「인천광역시 중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」를 전부 개정하여 알기 쉬운 법령 용어로 정비하고, 건축물관리자의 제설·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명확한 의미전달을 위한 목적 및 명칭, 용어 정비(안 제1조 ~ 제4조, 안 제6조)
- 나. 『자치법규 입안 매뉴얼』의 조·항·호·목의 사용방법에 따라 정비(안 제3조, 안 제4조, 안 제6조)
- 다. 제설·제빙 책임 범위 일부 구체적으로 규정(안 제4조)
- 라. 제설·제빙작업의 시기 내용 수정(안 제5조)
- 마. 제설·제빙 시 안전관리 규정 마련(안 제6조)
- 바. 제설·제빙 시 장비 구비에 대한 내용 구체적 명시(안 제7조)
- 사. [별표 1] 삭제

3. 참고사항

- 가. 관련법령 :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27조(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)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- 다. 입법예고:
- 라. 기 타
 - 규제사전심사:
 - 부패영향평가:
 - 성별영향평가:

인천광역시 중구 조례 제 호

인천광역시 중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중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인천광역시 중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2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·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도로”란 「도로법」 제2조제1호에 의한 도로, 그 밖의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.
2. “차도”란 연석선(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), 안전표지,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.
3. “보도”란 연석선·안전표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(유모차 및 「도로교통법 시행규칙」 제2조에 따른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)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.
4. “이면도로”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(「도로법」에 의한 고속 국도·일반국도·특별 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)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.
5. “보행자전용도로”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,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.
6. “제설·제빙”이란 보도, 이면도로, 보행자전용도로,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연에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.
7. “건축물관리자”란 건축물의 소유자·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.

제3조(제설·제빙작업의 책임 순위) 건축물관리자의 제설·제빙 책임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건축물관리자 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.

1. 소유자가 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: 소유자·점유자 및 관리자 순
2. 소유자가 건축물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: 점유자, 관리자 및 소유자 순

제4조(제설·제빙작업의 범위) 건축물관리자가 제설·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보도: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전체 구간
2.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: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전 구간
3. 「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」 제22조의8에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(이하 “시설물의 지붕”이라 한다)
 - 가. 지붕이 하나인 경우: 최상층의 지붕구간(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.)
 - 나.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있는 경우: 모든 지붕구간

제5조(제설·제빙의 시기) 건축물관리자는 제설·제빙 작업을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. 다만 일몰 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의 야간에 눈이 내린 경우에는 다음날(눈이 밤 12시 이후에 그친 경우에는 눈이 그친날) 오전 11시까지 제설·제빙 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.

제6조(제설·제빙방법) ①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과 시설물 붕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설·제빙을 하여야 한다.

1. 보도의 눈이나 얼음: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길 것
 2.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: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길 것
 3.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: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,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할 것
 4.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: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길 것. 다만,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길 수 있다.
- ②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, 차량 및 제설·제빙을 하는 사람(이하 “제설 작업자”라 한다)의 안전을 확보하여 제설·제빙을 하여야 한다.
- ③ 건축물관리자는 일몰, 폭풍, 이상한파 등으로 제설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설·제빙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7조(제설·제빙 도구 등의 관리) 건축물관리자는 삽·빗자루 등 제설·제빙에 필요한 도구와 제설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·장비·장구 등을 해당 건축물에 비치하고, 제설·제빙 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부서용]

부서별 의견수렴서

검 토 구 분		유	무
검토사항	1.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. 행정규제, 물가대책위 등 심의 3.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.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. 홍보계획(보도자료) 반영여부 6. 기타 문제점		
부서별(실·과) 의견			
협의개요	실·과별	제출의견	검토내용

[주민용]

주민 의견수렴서

의견제출자 인적사항			
성명		생년월일	
주소		연락처	

의견제출 내용

제출일자 : 년 월 일
 제출인 : (인 또는 서명)

인천광역시 중구 조례 제 호

인천광역시 중구 운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

인천광역시 중구 운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는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부서용]

부서별 의견수렴서

검 토 구 분		유	무
검토사항	1.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. 행정규제, 물가대책위 등 심의 3.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.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. 홍보계획(보도자료) 반영여부 6. 기타 문제점		
부서별(실·과) 의견			
협의개요	실·과별	제출의견	검토내용

[주민용]

주민 의견수렴서

의견제출자 인적사항			
성명		생년월일	
주소		연락처	

의견제출 내용

제출일자 : 년 월 일
 제출인 : (인 또는 서명)

인천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3-1336호

「인천광역시 중구 운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」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「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23년 8월 23일

인 천 광 역 시 중 구 청 장

인천광역시 중구 운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 폐지안 입법예고

□ 폐 지 사 유

- ‘운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’의 준공(2010.5.4.) 및 청산금 청산 완료에 따른 관련 규칙 폐지

□ 주 요 내 용

- 「인천광역시 중구 운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」 폐지

□ 의 건 제 출

- 이 규칙의 폐지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나 개인은 2023년 9월 15일 까지 인천광역시 중구청장(참조 : 도시항만개발과)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시항만개발과(도시개발팀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-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 - 폐지안에 대한 찬·반 여부와 그 이유
 - 기타 참고사항 등

※ 의견제출 및 문의 전화번호]

- ▷ 주 소 : (우22315)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27번길 80(관동1가)
인천광역시 중구청 도시항만개발과(도시개발팀)
- ▷ 전 화 : 032)760-7587 [FAX 032)760-6978]

- 입법예고기간 : 2023. 8. 23. ~ 2023. 9. 15. (25일간)

인천광역시 중구 규칙 제 호

**인천광역시 중구 운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
시행규칙 폐지규칙안**

인천광역시 중구 운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부서용]

부서별 의견수렴서

검 토 구 분		유	무
검토사항	1.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. 행정규제, 물가대책위 등 심의 3.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.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. 홍보계획(보도자료) 반영여부 6. 기타 문제점		
부서별(실·과) 의견			
협의개요	실·과별	제출의견	검토내용

[주민용]

주민 의견수렴서

의견제출자 인적사항			
성명		생년월일	
주소		연락처	

의견제출 내용

제출일자 : 년 월 일
 제출인 : (인 또는 서명)